

영어교사 전문성 개발과 교육실습

이 성 원 (경상대학교)

I. 전문직으로서의 교사

전문직이란 과학적 지식의 근거, 공식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엄격한 수련기간, 공공봉사의 의미, 고도의 전문적 행위의 표준, 어떤 구체적인 요구와 명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과제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직업이다(Wallace, 1991). 교사라는 직업은 전문직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것은 교사가 담당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인간성장 발달과정에 대한 지식과 교육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따라서 교사들은 전문지식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교직이 전문직으로 확립되자면 그 출발점인 교사 예비 교원양성단계에서부터 이런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교육실습은 바른 교육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공교과, 교수법 이론, 교육방법을 익힌 예비교사가 이론과 실재를 접목하여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양성교육에서 실습과정이 강화되어야 함은 의과대학에서 임상실습교육의 비율이 높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의 수업 참관실습 및 교육실습을 통해 교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실습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교육여건과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우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직전교사교육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형식적인 과정으로만 간주되고 있다.

II. 각국의 교육실습제도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4-6주간의 교육실습을 요구하는데 비해, 미국의 대학은 12-16주의 교육실습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실습 이수학점은 대개 2-3학점이지만 미국의 대학이 교육실습에 부과하는 학점은 대개 10학점 내외이다. 교육실습 외에 대학원 수준에서는 수습 교사제(internship)가 있는데 수습교사에 임명되어 1학기 또는 1년간 유급으로 실무실습을 한 후 졸업하게 된다.

독일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의 교육과정 이수는 물론이고, 2차에 걸친 국가고시와 2년 6개월 내지 3년간의 수습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본의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은 일반교육과목과 전문교육과목으로 구분되는데 일반교육과목은 인문, 사회, 자연의 세 영역으로, 전문교육과목은 교과와 교직으로 구분된다. 교육실습과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단계의 해당학교에서 3-4주간 실시되는데 동경도교육위원회는 '동경교사 양성학원'을 설립하고 실습기간을 대학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1년 동안 적어도 주 1회 공립소학교에서의 교육실습과 1주간 연속 집중실습도 시행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교사 양성과정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시간을 수습기간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70-100일 정도의 교육실습을, 독일은 2-3년간의

수습기간을 수행하고 있고, 일본은 교육실습기간의 제도적, 점진적인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이론을 효과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시키고 현장경험을 통해 예비교사가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여 교수방법을 몸에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Ⅲ. 우리나라 교육실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교사교육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실습의 문제점은 첫째, 예비 영어 교사들이 경험한 현장 교육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많은 현장 교사들이 문법·번역식 교수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 목표와 다른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습생들이 습득해야 할 구체적인 교수내용, 방법 등이 세밀하게 명시된 교사 실습 계획서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관찰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 실습계획서는 당연히 교과지도기준과 평가기준을 세밀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상세화된 기준을 교육계획서에 기술한 교육실습학교를 찾아보기 힘들다. 즉 이것은 지도기준과 성취기준이 없는 교육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만큼 교육실습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실습전담교사와 대학과의 연계 교육의 필요성이다. 즉 교육협력학교를 지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해 실습전담교사가 일정기간 동안 교육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맡아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조력하며 상호작용하는 제도, 또한 대학의 교사교육 담당 교수와 현장에서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함께 교육실습을 할 수 있는 등의 방안도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교육실습의 개선방향에 관해 수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왔으며 2009부터는 실습기회와 기간을 확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그러나 교육실습 기회와 기간의 확대가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평가체제가 갖추어지지 않는 한 양적인 확대가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교사임용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교사임용제도는 가르치는 능력보다는 전공 지식에 대한 평가였으며 개정된 교사임용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사가 전문직이라는 의미는 교사만이 가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르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하지만 가르치는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전에 지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현행 방식 하에서는 가르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현행의 제도로 사회가 원하는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교사를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